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이수진 · 임미애
남인순 · 이재정 · 전진숙
진선미 · 김남희 · 김 윤
권향엽 · 이연희 · 전용기
박홍배 · 최혁진 · 송재봉
백승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.1%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.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.8%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.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,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

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26조)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”를 “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”로, “시·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”를 “시·도의회의원선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”를 “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”로, “50을”을 “25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”를 “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성추천보조금 배분·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)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<u>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</u> 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(이하 “여성추천보조금”이라 한다)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, <u>시·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</u> 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	제26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) ① ----- ----- <u>지역구</u> <u>시·도의회의원선거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·도의회의원선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</u> ----- -----.
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
경우 <u>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</u>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<u>50</u>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 1. ~ 4. (생략) ③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<u>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</u>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.	<u>-----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-----</u> ----- ----- -----<u>25</u>를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, 시·도지사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-----</u> ----- -----.
--	---